

# 충청북도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(안) 심 사 보 고 서

1998. 6. 17  
내 무 위 원 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 및 회부일자

· 제출일자 : 1998년 6월 9일

· 회부일자 : 1998년 6월 9일

다. 상정일자 : 제14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

· 제1차 내무위원회(1998.6.17)상정,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 
심의의결

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내무국장 박만순)

가. 제안이유

공동주택 입주자에 대한 도세감면 면적범위를 확대하여 IMF의 금융지원조치 이후 침체되어 있는 건설 및 주택 경기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세제를 지원하기 위함.

## 나. 주요골자

- 최초 공동주택 입주자에 대한 감면범위 확대
  -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 1주택이 되는 입주자중 전용면적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감면혜택이 없던 것을
    - 전용면적 60제곱미터초과 85제곱미터이하의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함
    - ※ 현행 도세감면 조례상 감면내용(취·등록세)
      - 전용면적 : 40㎡이하 : 100% 면제
      - 전용면적 : 40㎡ ~ 60㎡이하 : 50% 경감

## 3. 전문위원 검토요지

(전문위원 : 오건영)

충청북도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

이는 IMF의 금융지원 조치 이후 침체되어 있는 건설 및 주택 경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주택 입주자에 대한 도세감면 대상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

현행 전용면적 60㎡이하인 공중주택에 대하여 도세감면혜택을 주던 것을 전용면적 60㎡초과 85㎡이하인 공중주택에 대해서도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여 주어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승인하여 줄이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론요지 : “생략”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 의견요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(안)
- 신·구조문 대비표